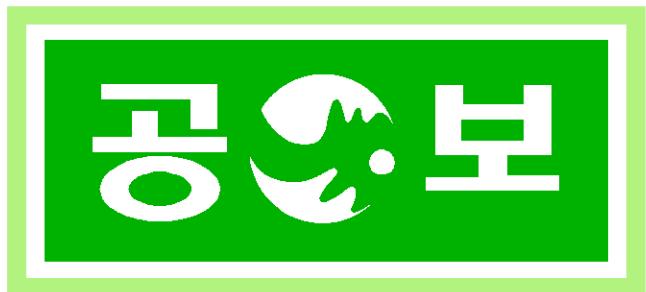


# 울산광역시북구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공	기 관 의 장
람	



제 703 호 2011. 8. 8(월)

## 공 고

- 울산광역시북구 공고 제2011-501호【소하천공사시행(소하천 점용·사용)허가공고】 ..... 2
- 울산광역시북구 공고 제2011-506호【울산광역시 북구 전통상업보존지역 지정 및 대규모·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 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】 ..... 3

회 람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

발행: 울산광역시북구 편집: 기획홍보실(☎219-7207 행정7207)

공고 제2011-501호

## 소하천공사시행(소하천 점용·사용)허가공고

소하천정비법시행령 제7조제4항(소하천정비법시행규칙 제10조제3항)의 규정에 의하여 소하천공사시행(소하천 점용·사용)허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1년 08월 08일

**울산광역시 북구청장**  직인

시행(점용· 사용)자	상호 및 명칭		한국전력공사 남부건설단
	대표자	한국전력공사 남부건설단장	주소 부산광역시 시구 보수로 29
소하천명		돌논천	
공사(점용· 사용)개요	위치	매곡동 370-1, 370-2, 370-3, 371-1, 373-5번지	
	면적	830.65m <sup>2</sup>	폐천부지 예상면적 m <sup>2</sup>
	기간	일시 : 2011. 08. 02. ~ 2012. 05. 27. 5년 : 2011. 05. 28. ~ 2015. 12. 31	
목적 및 사유		공작물 설치(전기공급시설 전력구)	
열람시류 : 설계도서 1부			

**울산광역시북구 공고 제2011 - 506호**

「울산광역시 북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·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알리고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1년 8월 8일  
울산광역시북구청장

**울산광역시 북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 
대규모·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 
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**

**1. 개정이유**

「유통산업발전법」이 2011년 6월 30일자로 일부개정됨에 따라, 개정된 법령을 반영하여 「울산광역시 북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·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」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

**2. 주요내용**

- 가. 전통상업보전구역 지정범위를 “500미터 이내”에서 1킬로미터 이내”로 확대(안 제14조1항)
- 나. 전통상업보존구역 관련 조항의 유효기간을 “2013년 11월 23일”에서 “2015년 11월 23일”로 2년 연장(안 부칙 제2조)

### 3. 의견제출

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나 개인은 2011년 8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(참조: 경제일자리과장)에게 전화·팩스 또는 서면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 (☎ 219-7462, FAX 219-7469)

- 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- 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, 전화번호
- 다. 그 밖의 참고사항 등

### 4. 기타

「울산광역시 북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·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」 일부개정 조례안의 전문은 울산광역시 북구 경제일자리과에 비치하여 예고기간 동안 공시합니다.